|  |
| --- |
|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명서류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한다.  5.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하시오. |

**【문제 1】(35점)**

**(물음 1)** 다음은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 ㈜우리의 제14기 사업연도(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우리는 제13기에 장기투자목적으로 ㈜나눔의 주식 900주를 1주당 16,000원에, ㈜보탬의 주식 1,000주를 1주당 15,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2. ㈜우리의 제14기에 귀속되는 배당자료이다.   |  |  |  |  | | --- | --- | --- | --- | | 회사명 | 지분율 | 현금배당금액 | 주식취득일 | | 배당기준일 | | ㈜나눔 | 10% | 4,500,000원 | 2013년 10월 19일 | | 2014년 5월 31일 | | ㈜보탬 | 40% | 9,000,000원 | 2013년 12월 15일 | | 2014년 1월 31일 |   ① ㈜나눔은 상장내국법인이고, ㈜보탬은 비상장내국법인이다.  ② ㈜우리는 제14기에 무상주 수령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③ ㈜나눔은 총발행주식의 30%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제14기에 주식발행초과금 3,500,000원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무상주 1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무상주 배정기준일 2014년 11월 30일)를 교부받았다.  ④ ㈜우리는 제14기에 ㈜보탬으로부터 무상주 75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무상주 배정기준일 2014년 8월 31일)를 교부받았다. ㈜보탬이 자본전입한 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10%, 감자차익 20%,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0%, 자기주식처분이익 40%이다.  3. ㈜우리는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제14기에 차입금 및 지급이자는 없다. |

**<요구사항 1>**

㈜우리가 ㈜나눔과 ㈜보탬의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나눔 |  |
| ㈜보탬 |  |

**<요구사항 2>**

㈜우리가 ㈜나눔과 ㈜보탬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에 대한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요구사항 1>에 의한 ㈜나눔의 의제배당액은 500,000원, ㈜보탬의 의제배당액은 1,000,000원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나눔 |  |
| ㈜보탬 |  |

**(물음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법인 ㈜나라의 제14기 사업연도(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유형자산의 현황   |  |  |  |  | | --- | --- | --- | --- | | 구 분 | 제14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 | | 제13기 | 제14기 | | 건 물 | 120,000,000원 | 20,000,000원 | 15,000,000원 | | 비 품 | 90,000,000원 | 10,000,000원 | 18,000,000원 |   ① 건물과 비품의 최초 취득가액은 각각 200,000,000원과 150,000,000원이다.  ② 제12기말 건물의 상각부인잔액은 2,000,000원이고, 제12기말 비품의 상각부인잔액은 5,000,000원이다.  2. 다음은 제13기까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모두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잔액의 5%를 초과하며,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이 아니다.   |  |  |  | | --- | --- | --- | | 구 분 | 건 물 | 비 품 | | 제12기 | 10,000,000원 | 15,000,000원 | | 제13기 | 8,000,000원 | 15,000,000원 |   3. ㈜나라는 건물에 대한 전기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하고 제14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 | | (차)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3,000,000 | |  | |  | (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 |   4. 건물과 비품의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정액법 상각률은 0.1이고, 정률법 상각률은 0.25로 가정함). |

**(물음 3)** 제조업을 영위하는 ㈜만세의 제14기 사업연도(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자산·부채 평가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재고자산 현황   |  |  |  |  |  | | --- | --- | --- | --- | --- | | (단위 : 원) | | | | | | 구 분 | 장부상  계상금액 | 세무상 평가금액 | | |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 | 제 품 | 10,000,000 | 10,000,000 | 9,000,000 | 11,000,000 | | 재공품 | 6,200,000 | 6,000,000 | 7,000,000 | 6,500,000 | | 원재료 | 7,500,000 | 8,000,000 | 7,000,000 | 7,500,000 |   ① ㈜만세는 제품의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여 평가해 왔으나, 제14기부터는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 5일에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였다.  ② ㈜만세는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해왔으나, 계산착오로 200,000원을 과대계상하였다.  ③ ㈜만세는 원재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고, 전기말 원재료는 당기 중 모두 비용처리되었다.  ④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는 원재료와 관련된 재고자산평가증 100,000원(△유보)이 있다.  2. ㈜만세는 제13기에 단기적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대한의 주식을 제14기에 8,000,000원에 모두 처분하였다.  ① 처분시 회계처리   |  |  |  | | --- | --- | --- | | (차) 현 금 8,000,000 | |  | |  | (대) 단 기 매 매 증 권 6,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2,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는 ㈜대한의 주식과 관련된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900,000원(유보)이 있다.  3. 외화자산 및 부채의 현황   |  |  |  |  | | --- | --- | --- | --- | | 구 분 | 외화금액 | 평가전 가액 | 평가이익  (△손실) | | 외화매출채권 | $25,000 | 24,500,000원 | 500,000원 | | 외화선수금  (용역관련) | $5,000 | 4,750,000원 | △250,000원 | | 외화재고자산 | $30,000 | 29,970,000원 | 30,000원 | | 외화차입금 | $7,000 | 6,570,000원 | △430,000원 |   ① 외화자산 및 부채는 모두 제14기에 발생하였으며, 평가전 가액은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한 금액이다.  ② ㈜만세는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제14기 사업연도말 매매기준율은 1,000원/$이다.  ③ ㈜만세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④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각 자산·부채별로 한다.  4. 대손충당금 현황   |  |  |  |  | | --- | --- | --- | --- | | (단위 : 원) | | | | | 기초잔액 | 당기 상계액  (감소) | 당기 설정액  (증가) | 기말잔액 | | 6,000,000 | 2,000,000 | 1,000,000 | 5,000,000 |   ① 당기 상계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였으나, 그 중 800,000원은 특수관계인(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금)이다.  ② 제13기말 현재 대손부인액(전액 매출채권임)은 1,000,000원으로서 그 중 300,000원은 당기 중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  ③ 제14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150,000,000원 중 500,000원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④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세무상 장부가액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제13기말 : 100,000,000원  · 제14기말 : 200,000,000원 |

**(물음 4)** 내국법인 ㈜승리의 제14기 사업연도(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국별한도제 |  |
| 일괄한도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국내원천 소득금액은 300,000,000원이다.  2. 국외원천 소득금액 및 외국납부 법인세 현황   |  |  |  |  | | --- | --- | --- | --- | | (단위 : 원) | | | | | 구 분 | A국 | B국 | C국 | | 소득금액 | 50,000,000 | 40,000,000 | 10,000,000 | | 외국납부세액 | 6,500,000 | 3,000,000 | 2,000,000 |   ① 외국납부세액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되었다.  ② 제12기 사업연도에 한도초과로 공제되지 못한 B국의 외국납부세액은 500,000원이다.  ③ 제10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50,000,000원이 있으며,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국가는 불분명하다.  3. 법인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200억원 초과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문제 2】(12점)**

다음은 중소기업인 ㈜금강의 제14기 사업연도(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5,000,000,000원은 매출환입 200,000,000원, 사전약정 없는 매출할인 100,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50,000,000원(미지급접대비 8,000,000원 포함)이고, 접대비 지출건당 1만원 초과분 중 신용카드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10,000,000원이다.  3. 손익계산서상 판매촉진비에는 ㈜금강의 제품 A(원가 15,000,000원, 시가 20,000,000원)를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 --- | --- | | (차) 판매촉진비 17,000,000 | |  | |  | (대) 매 출 15,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00 | |  |  |  |  | | --- | --- | --- | | (차) 매 출 원 가 15,000,000 | |  | |  | (대) 제 품 15,000,000 | |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의료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 50,000,000원인 기계장치(원가 30,000,000원)를 2014년 12월 10일 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그 대금 중 70,000,000원은 취득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10,000,000원은 2015년 1월 5일에 지급하였다.  5.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수해이재민 구호금품    20,000,000원  ② 국방헌금    30,000,000원  ③ 근로복지진흥기금 10,000,000원\*  \* 선일자수표 : 교부일 2014.12.10., 발행 및 결제일 2015.1.10.  6. 제13기(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에 불우이웃돕기성금 5,0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기부금 8,000,000원(당기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됨)을 가지급금으로 재무상태표에 자산계상 하였다.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7. 제13기까지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없다. 제14기말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은 120,000,000원(제8기 발생분 50,000,000원, 제9기 발생분 70,000,000원)이다. |

**(물음 1)** 제14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접대비 한도초과액 제외)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물음 2)** 제14기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과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수입금액 |  |
| 접대비 한도초과액 |  |

**(물음 3)** 제14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법정기부금 해당액 |  |
| 지정기부금 해당액 |  |

**(물음 4)** 제14기 차가감소득금액이 200,000,000원, 법정기부금 해당액 80,000,000원, 지정기부금 해당액 2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  |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  |

**【문제 3】(20점)**

**(물음 1)**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갑을(중소기업 아님)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갑을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율을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답안 양식)

|  |  |  |
| --- | --- | --- |
| 자료번호 | 과세표준 | 세율 |
| 1. |  |  |
| … | … | … |
| 8. |  |  |
| 합 계 |  |  |

|  |
| --- |
| **< 자 료 >**  1. 상품 A의 국내매출액은 300,000,000원이다. 이는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20,000,000원이 차감되고,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은 연체이자 1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2. 상품 B를 2014년 4월 10일(기준환율 900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당일 계약금 $20,000을 수령하여 4월 15일(기준환율 950원/$)에 원화로 환가하였다. 중도금 $50,000은 4월 20일(기준환율 980원/$)에 수령하였고, 상품 B를 4월 23일(기준환율 960원/$)에 선적하였다. 잔금 $30,000은 6월 5일(기준환율 970원/$)에 수령하여 6월 15일(기준환율 950원/$)에 원화로 환가하였다. 중도금은 6월 30일 현재 환가하지 않고 외화로 보유하고 있다.  3. 상품 C(시가 1,000,000원, 원가 800,000원)를 ㈜갑을의 직원야유회에 경품으로 무상 제공하고, 상품 D(시가 2,000,000원, 원가 1,000,000원)를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1,500,000원에 공급하였다. 상품 C와 상품 D의 매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토지 E와 건물 F를 2014년 6월 10일 9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였다. 양도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고 장부가액, 감정평가액,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단위 : 원) | | | | 구 분 | 토 지 | 건 물 | | 장부가액 | 50,000,000 | 30,000,000 | | 감정평가액\* | 40,000,000 | 20,000,000 | | 기준시가 | 30,000,000 | 30,000,000 |   \* 2013.7.20.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  5. 건물 G를 2014년 5월 1일 임대보증금 292,000,000원, 월임대료 3,000,000원에 임대하고, 6개월간의 월임대료 18,000,000원을 선불로 받았다. 6월 30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3%로 가정한다.  6. 상품 H를 2014년 4월 30일 10,000,000원에 판매 및 인도하고 대가는 5월말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수령하기로 하였다.  7. 상품 I와 상품 J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AA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AA가 지정한 국내의 사업자 ㈜병정에게 2014년 4월 10일에 인도하고 대가 3,000,000원(상품 I 2,000,000원, 상품 J 1,000,000원)을 인도 당일 원화로 외국환은행에서 수령하였다. ㈜병정은 인도받은 상품 I를 2014년 4월 15일에 그대로 해외로 반출하였고, 상품 J를 2014년 4월 20일에 ㈜병정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  8. 상품 K를 2013년 4월 5일 5,000,000원에 ㈜치악에게 외상으로 판매하였는데, ㈜치악이 2014년 6월 10일에 파산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

**(물음 2)**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백두(중소기업 아님)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4년 1월 1일 ∼ 2014년 6월 30일) 자료이다. 단, 매입 및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2013년 제2기와 2014년 제1기 공급가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단위 : 원) | | | | 구 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 2013.7.1. ∼ 2013.9.30. | 150,000,000 | 120,000,000 | | 2013.10.1. ∼ 2013.12.31. | 70,000,000 | 60,000,000 | | 2014.1.1. ∼ 2014.3.31. | 120,000,000 | 80,000,000 | | 2014.4.1. ∼ 2014.6.30. | 60,000,000 | 100,000,000 |   2. 2014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단위 : 원) | | | | | 구 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공통\*3 | | 1.1. ∼ 3.31. | 9,000,000\*1 | 6,000,000 | 3,000,000 | | 4.1. ∼ 6.30. | 8,000,000\*2 | 4,000,000 | 5,000,000 |   \*1 대표이사 별장 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3. ㈜백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2014년 2월 10일 50,000,000원에 취득(부가가치세 제외)하여 사용하다가 2014년 5월 30일 45,000,000원에 처분(부가가치세 제외)하였다.  4. 면세농산물을 2014년 4월 25일 60,18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 중 30,600,000원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고 24,480,000원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5,100,000원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사용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다. 2014년 1월 1일 현재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면세농산물은 8,000,000원이며 1,850,000원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6,150,000원은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

**<요구사항 1>**

<자료>의 1번과 2번 사항을 이용하여 2014년 제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구 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공통 |
| 예정신고 |  |  |  |
| 확정신고 |  |  |  |

**<요구사항 2>**

<자료>의 1번과 3번 사항을 이용하여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2014년 제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세 액 |  |  |

**<요구사항 3>**

<자료>의 1번과 4번 사항을 이용하여 2014년 제1기의 의제매입세액을 구하시오. 단, 면세사업은 전부 면세농산물과 관련된 사업이며, 과세사업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이라고 가정한다.

**(물음 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재고매입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구 분 | 재고매입세액 |
| 건물 |  |
| 기계장치 |  |
| 건설중인자산 |  |
| 토지 |  |
| 자동차 |  |
| 제품 |  |
| 저장품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간이과세자 김갑돌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2015년 1월 1일 현재 김갑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단위 : 천원) | | | | | | 구 분 | 취득일 | 취득가액\*1 | 장부가액 | 시가 | | 건물 | 2013.1.11. | 110,000 | 80,000 | 70,000 | | 기계장치 | 2014.2.10. | 88,000 | 75,000 | 65,000 | | 건설중인자산\*2 | 건설중 | - | 90,000 | - | | 토지 | 2012.8.17. | 250,000 | 200,000 | 300,000 | | 자동차\*3 | 2013.11.3. | 30,000 | 28,000 | 29,000 | | 제품 | 2014.7.19. | 11,000 | 9,000 | 12,000 | | 저장품 | 2013.5.10. | 6,000 | 5,000 | 3,000 |   \*1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2 건설중인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10,000,000원이다.  \*3 자동차는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이다.  2. 김갑돌의 사업에 적용되는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과세기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부가가치율 | 20% | 25% | 30% | 35% | |

**【문제 4】(20점)**

**(물음 1)** 다음은 거주자인 갑(61세, 남성)의 2014년도 소득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14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2,000,000원(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2015년 1월 20일이나, 2014년 12월 20일에 수령함)  ②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 3,000,000원  ③ 5년간 가입한 저축성보험(납입보험료 1억원)이 만기가 되어 2014년에 받은 보험금 : 107,000,000원  ④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함) : 5,000,000원  ⑤ 비상장 내국법인 ㈜A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6,000,000원  ⑥ 비상장 내국법인 ㈜B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법에 따라 갑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단위 : 원) | | | | 사업연도 | 결산확정일 | 금액 | | 제13기(2013.1.1.∼2013.12.31.) | 2014.3.15. | 4,000,000 | | 제14기(2014.1.1.∼2014.12.31.) | 2015.3.12. | 2,000,000 |   2. 연금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⑴ 갑은 2007년 3월 1일에 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014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다.  ⑵ 갑의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은 100,000,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연금계좌 본인불입액 : 70,000,000원(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금액 6,000,000원 포함)  ②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시켜서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 12,000,000원  ③ 연금계좌 운용수익 : 18,000,000원  ⑶ 갑이 2014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34,000,000원이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로 받은 것은 아니다. |

|  |
| --- |
| 3. 상기 이외의 나머지 소득 내역(2014년도 귀속)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에 대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① 20년간 보유한 골동품(제작 후 200년이 경과함) 1개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비과세 대상은 아님) : 100,000,000원  ② 지역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대가  : 20,000,000원 |

**<요구사항 1>**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gross-up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
| 배당가산액 |  |

**<요구사항 2>**

연금수령한도와 총연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연금소득은 모두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연금수령한도 |  |
| 총연금액 |  |

**<요구사항 3>**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 포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
| 기타소득금액 |  |

**(물음 2)** 다음은 거주자인 을(42세, 여성)의 2014년도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자소득금액 : 6,000,000원(정기예금이자)  ② 배당소득금액 : 20,660,000원(배당가산액 660,000원 포함)  ③ 근로소득금액 : 33,000,000원(총급여액은 45,000,000원임)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40세) : 사업소득금액이 20,000,000원 있다.  ② 모친(68세) : 장애인이며, 소득은 없다.  ③ 장남(18세) : 고등학생이며, 소득은 없다.  ④ 차남(15세) : 중학생이며, 소득은 없다.  3. 보험료 등의 납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납입액 : 5,000,000원  ② 연금계좌 납입액 : 6,000,000원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 2,000,000원  ④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종합보험료(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 800,000원  ⑤ 모친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 1,200,000원  4. 의료비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을 위한 건강진단비용 : 1,000,000원  ② 모친을 위한 질병치료비용 : 3,000,000원  ③ 차남을 위한 치료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용 : 350,000원  5. 종합소득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 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 1억 5천만원 초과 | 3천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

**<요구사항 1>**

종합소득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인적공제액 |  |
| 연금보험료공제액 |  |
| 특별소득공제액 |  |

**<요구사항 2>**

종합소득공제액이 9,66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배당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없다.

(답안 양식)

|  |  |
| --- | --- |
| 일반산출세액 |  |
| 비교산출세액  (분리과세시 세부담액) |  |
| 배당세액공제액 |  |

**<요구사항 3>**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5,966,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적용가능한 모든 세액공제액(배당세액공제액 제외)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특별세액공제는 항목별로 각각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세액공제액 |  |
| △△세액공제액 |  |
| … |  |
| 합 계 |  |

**【문제 5】(5점)**

다음은 거주자인 병의 양도소득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병은 자료에 제시된 토지와 주식 외에 양도한 다른 자산은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토지와 주식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단위 : 원) | | | | 구 분 | 토 지 | 비상장주식 | | 양도일 | 2014.6.20. | 2014.10.9. | | 실지양도가액 | 200,000,000 | 100,000,000 | | 취득일 | 2009.5.15. | 2004.3.10. | | 실지취득가액 | ? | 60,000,000 | | 양도비용 | 3,000,000 | 1,000,000 |   2. 토지(등기된 것이며, 일반지역에 소재)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하며,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없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160,000,000원  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96,000,000원  3. 토지의 양도비용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1,000,000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2,000,000원이며, 자본적지출액은 없다.  4. 비상장주식은 특수관계인(개인)으로부터 시가 40,000,000원인 것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양도비용은 전액 증권거래세이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일부)은 다음과 같다.  ① 보유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 15%  ② 보유기간 10년 이상 : 30% |

**<요구사항>**

토지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토지 양도소득금액 |  |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 |  |

**【문제 6】(8점)**

**(물음 1)** 다음 각 사례별로 납세의무자와 적용 가능한 세법상 규정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구체적인 세법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어떠한 내용이 적용가능한지만 기술해도 되나 세법명만 적으면 안됨). 단, 각 사례는 독립적이다.

(답안 양식)

|  |  |  |
| --- | --- | --- |
| 사례 | 납세의무자 | 적용가능 세법규정 |
| (예시) | A |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로 인해 증여세 납부 |
| 1 |  |  |
| 2 |  |  |

|  |
| --- |
| **<사례 1>**  2014년 2월, 거주자 갑의 모친인 거주자 을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B(2012년에 설립)의 주식 1,000주(지분율 3%)를 갑에게 증여하였으나, 갑은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법인 ㈜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A는 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없는 영업 중인 회사이다.  **<사례 2>**  2014년 6월, 거주자 갑의 배우자인 거주자 병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시가 300,000,000원)를 비상장법인 ㈜C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C는 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휴업 중인 회사이다. |

**(물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과 증여의제의 차이점을 비교설명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2개씩 기술하시오(8줄 이내, 초과부분은 채점에서 고려하지 않음).

**(물음 3)** 갑은 대학 졸업 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창업을 하였다. 갑이 받은 구체적인 도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도 갑, 을, 병, 정에게 적용 가능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문제를 답안 양식에 따라 기술하시오. 단, 적용 세법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없음” 이라고 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구 분 | 세법명 | 적용 가능한 과세 문제 |
| 갑 |  |  |
| 을 |  |  |
| 병 |  |  |
| 정 |  |  |

|  |
| --- |
| **< 자 료 >**  1.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부친 을의 상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100억원)를 2014년 1월 1일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친구인 병의 토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20억원)를 2014년 2월 1일부터 무상으로 빌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 2014년 3월 1일, 대금업을 운영하지 않는 모친 정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현금 5억원을 0.1%의 연이자율로 차입하였다. 차용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는 적법하게 구비되었다.  4. 갑, 을, 병, 정은 모두 거주자이다. |

**- 끝 -**

여 백

여 백

여 백